

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과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법령을 간결하고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손해보험 의무가입 및 제출 조항삭제(안 제12조)
- 나.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에 감면기준을 명시(안 제5조)
- 다. 불필요한 규제삭제(안 제7조, 안 제10조)

3. 조례안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「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구포동 670-2번지”를 “옥계2공단로278-17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정한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”를 “정하는 바에 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”으로, “감면”을 “50% 감면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제12조의 제목“(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)”을“(손해배상)”으로 하고, 제12조 중 “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”를 “때에는”으로, “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구미시 구포복지관(이하 복지관 이라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명칭과위치) 복지관의 명칭은 "구미시 구포복지관"이라 하고 위치는 구미시 <u>구포동 670-2번지</u> 로 한다.	제2조(명칭과위치) ----- ----- ----- <u>옥계2공단로278-17</u> -----.
제5조(사용료) ① 복지관 사용료는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.	제5조(사용료) ① ----- ----- ----- <u>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
②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정한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따라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-- 50% 감면 --.</u>
제7조(시설사용 및 불허가 등) 복지관의 사용은 구포매립장 주변	제7조(시설사용 및 불허가 등) -- -----

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
제10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2조(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)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,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----.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10조(위탁의 취소)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12조(손해배상) -----

때에는 -----
----- 한
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□ 「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」

제24조(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)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4조(손해보험 및 공제계약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(共濟)에 가입하여야 한다.

1. 건물, 선박

2.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·기계 및 기구

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(有償)·무상(無償)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소관 실·과		청소행정과
입 안 자	과 장	박 호 형
	담 당	우 춘 근
	담 당 자	박 호 상 (480-5243)